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6월 13일

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「국가·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(안 제2조제3항)
-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(안 제18조의2)

-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토록 규정
(안 제19조제6항)
-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 (안 제20조제1항)
- 공가의 건강검진 관련규정 개정(안 제22조제5호)
-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「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」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1조제1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또한,

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경력 규정,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토록 규정하는 등 「국가·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